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연도	2024.01.01 ~ 2024.12.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 인 명 위즈코프(주)	사업자등록번호 116-81-36215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①요 건		②검 토 내 용		③적합 여부	④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
	⑩① 사 업 요 건	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기준경비율코드</th><th>사업수입금액</th></tr><tr><td>업태별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(01) (서비스(사업관련)업)</td><td>(04) 722000</td><td>(07) 59,920,525,630</td></tr><tr><td>(02) ()업</td><td>(05)</td><td>(08)</td></tr><tr><td>(03) 그 밖의 사업</td><td>(06)</td><td>(09)</td></tr><tr><td>계</td><td></td><td>59,920,525,630</td></tr></table>		구 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업태별			(01) (서비스(사업관련)업)	(04) 722000	(07) 59,920,525,630	(02) ()업	(05)	(08)	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계		59,920,525,630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
			구 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																		
			업태별																					
			(01) (서비스(사업관련)업)	(04) 722000	(07) 59,920,525,630																			
(02) ()업	(05)	(08)																						
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					
계		59,920,525,630																						
중 소 기 업	⑩② 규 모 요 건	○아래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출액 - 당 회사 (10) (599.2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 (11) (800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 (12) (949.8 억원)	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적 (Y) 부 (N)																		
			⑩③ 독 립 성 요 건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어야 할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(⑩의 ① 기준) 이내일 것	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
					⑩④ 유 예 기 간		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년)		(20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
소 기 업	⑩⑤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	중소기업 업종(⑩①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⑩③)을 충족하는지 여부		(21) (Y) (N)	(27)																		
	⑩⑥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' 평균매출액등 ' 은 ' 매출액 ' 으로 본다) 이내일 것		○ 매 출 액 - 당 회사 (14) (599.2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 (15) (50.0 억원) 이하		(22) (Y) (N)	적 (Y) 부 (N)																		

구분	① 요 건	②검 토 내 용	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⑩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 (N)	(28)
	⑩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 호에 적합할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(24) (Y) (N)	적 (Y)
	⑩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구 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)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(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0조제1 항제1 호가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(Y) (N)	(부 (N))
	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 균		
		억원	억원	억원	억원		